# 제14장 석탄산업의 구조조정

## 제1절 석탄산업의 현황과 종합대책

석탄산업과 서기관 윤영춘

### 1. 개 요

우리 나라의 석탄산업은 1896년경 평양근처에서 소규모 탄광을 개발하기 시작한 이래 하나의 연료 혹은 동력원이라는 단순한 의미보다는『국내 유일의 부존에너지』로서 국민경제에 절대적인 위상으로 존립하여 왔다. 1973년과 1978년의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그 결정적인 역할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며, 국산에너지 사용을 통한 외화절감 등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 또한 실로 절대적인 것이었다.

정부에서도 꾸준히 증가하는 수요에 맞춰 석탄 증산정책을 펴왔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발맞춰 탄좌의 종합개발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석탄개발임시조치법(1961.12.31)』, 국내 유일한 에너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육성하기 위해『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1969.8.4)』, 급격한 수요와 공급의 팽창으로 인한 탄질의 저하를 막고 합리적인 수급조정을 위한『석탄수급에관한임시조치법(1975.3.29)』등 이른바 "석탄3법"을 제정하여 석탄산업을 보호·육성하여 왔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세계 환경보전 운동의 확산과 소득증대에 따른 고급에너지 선호경향으로 인하여 무연탄의 수요감소가 이어졌고, 탄광의 생산여건 또한 탄폭 협소·채탄 심부화 등 채굴조건의 악화로 작업능률 및 경제성이 떨어지면서 심각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대처하여 정부는 그 동안 개별적으로 시행되던 석탄산업 관련법률을 『석탄산업법(법률 제3807호, 1986.1.8)』로 통합·체계화하고 석탄산업의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을 위해 1989년부터 석탄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탄광지역 경제활성화대책 및 장기가행탄광에 대한 중점 육성대책 등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 2. 매장량 및 생산현황

### 가. 매장량

우리 나라의 무연탄 총 매장량은 약 14억톤으로서 가채 매장량은 약 3억톤 수준이나 산업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유연탄의 부존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표 Ⅵ-14-1> 탄전별 무연탄 매장량

(단위 : 천톤)

| 구 분 | 총매장량 | 비중(%) | 가채 매장량 | 비 중(%) |
|---|---|---|---|---|
| 삼 척 탄 전 | 402,985 | 28.5 | 122,790 | 34.9 |
| 정 선 탄 전 | 362,780 | 25.7 | 25,983 | 7.4 |
| 호 남 탄 전 | 59,389 | 4.2 | 18,771 | 5.3 |
| 문 경 탄 전 | 3,719 | 0.3 | 1,621 | 0.5 |
| 강 릉 탄 전 | 4,583 | 0.3 | 1,316 | 0.4 |
| 단 양 탄 전 | 20,531 | 1.5 | 4,165 | 1.2 |
| 충 남 탄 전 | 10,625 | 0.7 | 2,791 | 0.8 |
| 보 은 탄 전 | 2,263 | 0.2 | 1,238 | 0.3 |
| 기 타 탄 전 | 981 | 0.07 | 283 | 0.08 |
| (소 계) | 867,856 | 61.5 | 178,958 | 50.9 |
| 합리화된 탄전 | 543,189 | 38.5 | 172,363 | 49.1 |
| 합 계 | 1,411,045 | 100 | 351,321 | 100 |

주 : 2002.12 기준
자료 : 대한광업진흥공사 『광물자원매장량현황(2003년간행)』

나. 무연탄 생산현황

그 동안 무연탄 생산실적을 살펴보면, 정부의 증산정책에 힘입어 1963년 8,858천톤에서 연평균 4.1%씩 증가하여 1988년에는 최고 24,295천톤까지 생산하였으나, 급격한 소비감소에 따른 수급균형을 위하여 1989년부터 석탄산업구조조정을 시작하였고, 이로 인한 폐광으로 최근 몇 년간의 생산량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섰으며, 2003년에는 전년대비 0.6% 감소한 3,299천톤을 생산하였다.

<표 Ⅵ-14-2> 무연탄 생산현황

(단위 : 천톤, %)

| 연도 | 총 생 산 량 | | 석 공 | | 민 영 | | 전년대비 증 감 률 | 년평균 증감률 |
|---|---|---|---|---|---|---|---|---|
| | 생산량 | 구성비 | 생산량 | 구성비 | 생산량 | 구성비 | | |
| 1963 | 8,858 | 100.0 | 4,252 | 48.0 | 4,606 | 52.0 | 19.0 | |
| 1964 | 9,622 | 100.0 | 4,635 | 48.2 | 4,987 | 51.8 | 8.6 | |
| 1965 | 10,248 | 100.0 | 4,630 | 45.2 | 5,618 | 54.8 | 6.5 | |
| 1966 | 11,613 | 100.0 | 4,104 | 35.3 | 7,509 | 64.7 | 13.3 | |
| 1967 | 12,436 | 100.0 | 4,714 | 37.9 | 7,722 | 62.1 | 7.1 | |
| 1968 | 10,242 | 100.0 | 4,256 | 41.6 | 5,986 | 58.4 | △17.6 | |
| 1969 | 10,273 | 100.0 | 4,041 | 39.3 | 6,232 | 60.7 | 0.3 | |
| 1970 | 12,394 | 100.0 | 4,454 | 35.9 | 7,940 | 64.1 | 20.6 | |
| 1971 | 12,785 | 100.0 | 4,306 | 33.7 | 8,479 | 66.3 | 3.2 | |
| 1972 | 14,403 | 100.0 | 3,809 | 26.4 | 10,594 | 73.6 | 12.7 | |
| 1973 | 13,571 | 100.0 | 4,255 | 31.3 | 9,326 | 68.7 | △5.8 | |
| 1974 | 15,263 | 100.0 | 4,410 | 28.9 | 10,853 | 71.1 | 12.5 | |
| 1975 | 17,593 | 100.0 | 4,574 | 26.0 | 13,019 | 74.0 | 15.3 | ('63~'88) |
| 1976 | 16,427 | 100.0 | 4,617 | 28.1 | 11,810 | 71.9 | △ 6.6 | (4.1%) |
| 1977 | 17,268 | 100.0 | 4,508 | 26.1 | 12,760 | 73.9 | 5.1 | |
| 1978 | 18,054 | 100.0 | 4,672 | 25.9 | 13,382 | 74.1 | 4.6 | |
| 1979 | 18,208 | 100.0 | 4,702 | 25.8 | 13,506 | 74.2 | 0.9 | |
| 1980 | 18,624 | 100.0 | 4,786 | 25.7 | 13,838 | 74.3 | 2.3 | |

| 연도 | 총 생 산 량 | | 석 공 | | 민 영 | | 전년대비 | 년평균 |
|---|---|---|---|---|---|---|---|---|
| | 생산량 | 구성비 | 생산량 | 구성비 | 생산량 | 구성비 | 증 감 률 | 증감률 |
| 1981 | 19,865 | 100.0 | 4,883 | 24.6 | 14,983 | 75.4 | 6.7 | |
| 1982 | 20,116 | 100.0 | 5,006 | 24.9 | 15,110 | 75.1 | 1.3 | |
| 1983 | 19,861 | 100.0 | 4,863 | 24.5 | 14,998 | 75.5 | △ 1.3 | |
| 1984 | 21,370 | 100.0 | 4,953 | 23.2 | 16,417 | 76.8 | 7.6 | |
| 1985 | 22,543 | 100.0 | 5,056 | 22.4 | 17,486 | 77.6 | 5.5 | |
| 1986 | 24,253 | 100.0 | 5,218 | 21.5 | 19,035 | 78.5 | 7.6 | |
| 1987 | 24,273 | 100.0 | 5,178 | 21.3 | 19,095 | 78.7 | 0.1 | ('88～'03) |
| 1988 | 24,295 | 100.0 | 5,222 | 21.5 | 19,073 | 78.5 | 0.1 | (△12.5%) |
| 1989 | 20,785 | 100.0 | 4,953 | 23.8 | 15,832 | 76.2 | △14.4 | |
| 1990 | 17,217 | 100.0 | 3,988 | 23.2 | 13,229 | 76.8 | △17.2 | |
| 1991 | 15,058 | 100.0 | 3,846 | 25.5 | 11,212 | 74.5 | △12.5 | |
| 1992 | 11,970 | 100.0 | 3,624 | 30.3 | 8,346 | 69.7 | △20.5 | |
| 1993 | 9,443 | 100.0 | 3,069 | 32.5 | 6,374 | 67.5 | △21.1 | |
| 1994 | 7,438 | 100.0 | 2,616 | 35.2 | 4,822 | 64.8 | △21.2 | |
| 1995 | 5,720 | 100.0 | 1,975 | 34.5 | 3,745 | 65.5 | △23.1 | |
| 1996 | 4,951 | 100.0 | 1,777 | 35.9 | 3,174 | 64.1 | △13.4 | |
| 1997 | 4,514 | 100.0 | 1,599 | 35.4 | 2,915 | 64.6 | △ 8.8 | |
| 1998 | 4,361 | 100.0 | 1,574 | 36.1 | 2,787 | 63.9 | △3.4 | |
| 1999 | 4,197 | 100.0 | 1,474 | 35.1 | 2,723 | 64.9 | △3.8 | |
| 2000 | 4,150 | 100.0 | 1,476 | 35.6 | 2,674 | 64.4 | △1.1 | |
| 2001 | 3,817 | 100.0 | 1,326 | 34.7 | 2,491 | 65.3 | △8.0 | |
| 2002 | 3,318 | 100.0 | 1,193 | 36.0 | 2,215 | 64.0 | △13.1 | |
| 2003 | 3,299 | 100.0 | 1,229 | 37.3 | 2,070 | 62.7 | △0.6 | |

## 3. 석탄산업종합대책

### 가. 최근 석탄산업의 여건과 당면과제

#### (1) 만성적인 석탄수급의 불균형

석탄수요는 지난 1988년의 24,295천톤을 고비로 하여 계속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989년부터 비 경제탄광을 폐광하고 경제탄광은 합리적으로 육성하는 석탄산업합리화시책을 추진함으로 인하여

2003년 생산은 전년대비 0.5%감소. 소비는 3.5%증가로 재고가 5.7%감소한 9,527천톤으로 재고의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표 Ⅵ-14-3> 석탄산업의 변화 추세

(단위 : 천톤)

| 구 분 | 1988(A) | 2003(B) | 증감율(%, B/A) |
|---|---|---|---|
| ○ 가행탄광수(개) | 347 | 9 | △97.4 |
| ○ 생 산 량 | 24,295 | 3,299 | △86.4 |
| ○ 소 비 량 | 25,641 | 3,941 | △84.6 |
| ○ 재 고 량 | 10,774 | 9,527 | △11.6 |

주 : 최근 3년간 년평균 증감률 : 생산 △7.0%, 소비 △1.1%(민수용 △1.6%)

이러한 석탄수요 감소의 주 요인은 민수용탄 소비의 급격한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발전용탄 소비촉진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수요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생산량 감축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석탄은 국내 유일의 부존에너지 자원으로서 앞으로 남북통일시 북한의 에너지난 해소와 국제적 에너지자원의 수급 불안정시를 대비한 적정규모의 생산이 계속 필요하므로 2005년 이후, 300만톤 생산 수준에서 석탄의 수급균형을 달성하고 석탄산업을 계속 유지시켜 나갈 계획이다.

### ⑵ 탄광지역 경제의 심각한 위축

강원도 정선군과 태백시 및 삼척시 등 석탄광 개발에 따라 생성된 탄광지역은 석탄수요 감소에 따른 폐광 등 생산감축으로 인하여, 지역인구가 급격히 감소되고 경제가 심각히 위축되는 등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정부는 1982년부터 1991년까지 2단계에 걸쳐 광산지역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석탄생산 감축을 위한 석탄산업합리화 시책과 병행하여 탄광근로자 후생복지와 탄광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1991년에는 석탄산업법을 개정하여

탄광지역 진흥사업 지원제도를 법제화하였으며, 1992년부터는 1997년까지의 6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총 1,983억원을 투자하는 탄광지역진흥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석탄의 생산을 계속 감축 할 수밖에 없는 현시점에서 탄광지역 경제를 근원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탄광지역 경제를 석탄산업 위주에서 지역특성에 적합한 대체산업 중심으로 대폭 전환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나. 석탄수급안정대책

(1) 적정 생산규모의 설정·관리

석탄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비교적 경제성이 양호한 석공의 장성, 도계, 화순광업소와 경동, 동원, 한보, 태백, 마로, 태서, 삼탄, 영월 등 11개 탄광을 장기가행탄광으로 선정·관리하여 왔으나, 수급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어 2002년에는 장기가행탄광을 9개로 축소하는 등 석탄산업장기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 이후 석탄생산 300만톤 수준에서 수급이 안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표 Ⅵ-14-4> 가행탄광 현황

(단위 : 천톤)

| 구 분 | 1994 | 2003 | 증감(%) |
|---|---|---|---|
| ○ 석공(탄광수) | 2,616(4개) | 1,229(3개) | △53.0 |
| ○ 민영(탄광수) | 4,822(41개) | 2,070(6개) | △57.1 |
| 계(탄광수) | 7,438(45개) | 3,299(9개) | △55.7 |

⑵ 석탄수급현황

<표 Ⅵ-14-5> 무연탄수급표

(단위 : 천톤)

| 구 분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
| 이 월 | 8,127 | 8,461 | 8,975 | 9,750 | 10,393 | 10,783 | 10,785 | 10,591 | 10,169 |
| 생 산 | 5,720 | 4,951 | 4,514 | 4,361 | 4,197 | 4,150 | 3,817 | 3,318 | 3,299 |
| 수 입 | 146 | 27 | - | - | - | - | - | - | - |
| 수 요 | 5,485 | 4,502 | 3,769 | 3,842 | 3,853 | 4,159 | 4,026 | 3,808 | 3,941 |
| 저 탄 | 8,508 | 8,937 | 9,720 | 10,269 | 10,737 | 10,774 | 10,576 | 10,101 | 9,527 |

※ 이월에는 기타포함.

다. 탄광지역의 개발

⑴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정으로 각종 개발 지원근거 마련

우리 나라의 탄광지역은 석탄광의 개발에 따라 자연부락 형태로 마을이 생성되었다가 탄광의 개발이 확대되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인근 탄광지역과 통·폐합되면서 점차 도시화하게 되었다.

대탄광이 밀집되어 있는 강원도 태백·도계·정선지역 등은 이와 같이 생성된 대표적인 탄광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탄광지역은 산간오지에 위치하여 교통여건이 매우 열악하므로 물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숙련된 기술인력의 확보도 어려워 석탄을 대체할 제조업 등 유치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탄광지역의 지형적 여건과 기후 등을 고려할 때 이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대규모 고원관광지』로 개발하고, 스키장·골프장 등의 대체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나 산림법·환경관련법 등의 규제로 개발이 사실상 곤란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림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을 완화하고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의제 처리토록 하는 한편, 폐광지역 개발이나 대체산업 창업시에는 재정 및 금융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근거를 마련하

고, 폐광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내국인의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1개소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을 지난 1995년 12월에 제정하였고, 1996년 4월에는 같은법 시행령을 제정·공포함으로써 탄광지역을 대규모 고원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법적인 뒷받침을 마련하였다.

### ⑵ 대규모 고원관광지 개발

대표적인 폐광지역으로 개발여건이 열악한 폐광지역의 산간고지 지역을 지형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스키장·골프장·위락시설 등이 들어선 종합관광레포츠단지를 조성하여 고원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법적 여건을 완비하였다.

특히,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이 지역에서 관광숙박업과 스키장 등 종합 휴양업 시설을 개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도 출자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현재 추진중인 폐광지역의 고원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표 Ⅵ-14-6>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계획

(단위 : 억원)

| 사업명 | 계 | 국비 | | | | | | 지방비 | 민자 |
|---|---|---|---|---|---|---|---|---|---|
| | | 소계 | 산자부 | 건교부 | 농림부 | 환경부 | 문광부 | | |
| 관광사업 | 42,958 | 522 | 393 | - | - | - | 129 | 900 | 41,536 |
| 지역특화 | 5,261 | 248 | 66 | - | 173 | - | 9 | 103 | 4,910 |
| 기반시설 | 14,052 | 8,333 | 5,142 | 1,951 | 496 | 744 | - | 4,266 | 1,453 |
| 계 | 62,271 | 9,103 | 5,601 | 1,951 | 669 | 744 | 138 | 5,269 | 47,899 |

### ⑶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개장으로 본격적인 관광지 개발 촉진

폐광지역이 지닌 지리적 열세를 극복하면서 관광객 및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허가된 국내최초의 내국인 출입카지노((주)강원랜드)가 강원도 정선군에 숙박 및 카지노 시설(Small Casino Hotel)을 갖추고 2000.10.28 개장되었다.

이에 따라 폐광지역을 가족형 종합관광휴양지로 개발하는 강원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스몰 카지노의 운영이익금을 재원으로 메인 카지노호텔 및 골프장, 테마파크 등 종합관광시설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됨에 따른 상승작용으로 침체되었던 폐광지역에 대해 관망자세를 보이던 민간자본의 투자를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 ⑷ 기반시설의 확충과 대체산업창업 촉진

탄광지역 및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확충을 위하여 97년부터는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을 2005년까지의 계획으로 추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탄광지역환경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한 탄광지역개발사업은 2001년부터 착수하여 2010년까지 추진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탄광지역에 석탄산업을 대체하는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의 80% 수준을 장기·저리로 융자하고 있으며 1996년부터 2003년까지 1,263억원을 지원하였고 2004년에는 9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Ⅵ-14-7>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 | 탄광지역개발사업 | 대체산업융자지원 |
|---|---|---|---|
| 사업기간 | 1997~2005 | 2001~2010 | 1997~2005 |
| 2003년까지 실적 | 4,363 | 1,564 | 1,263 |
| 2004년 계획 | 775 | 847 | 96 |

# 제 2 절 석탄산업의 합리화

석탄산업과 사무관 김형명

## 1. 개 요

그 동안 가정연료의 주종이었던 무연탄 수요는 1977~1986년간 연평균 4.7%씩 증가하여 왔으나, 1988년 이후 무연탄 수요가 급감하였으며, 이는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른 청정에너지 선호경향이 확산한데 기인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탄광 작업장이 매년 17.1m정도 심부화되는 추세에 있어 심부화에 따른 개발비용이 증가되고 열악한 석탄부존 여건으로 기계화 작업이 제한되므로써 생산원가중 임금비중이 1998년 기준으로 58.9%를 차지하고 있어 석탄산업은 생산원가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상실은 물론 급속한 수요감소로 이중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석탄산업은 1980년대 중반까지 수요에 부합한 증산체제에서 수요와 생산성을 감안한 적정생산체제로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석탄광의 기업경영은 대부분 영세한 기업이고 폐광이 되는 경우, 광업의 특성상 잔존자산의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임금체불 등 각종 채무비용의 해결능력 한계로 커다란 사회문제를 유발하게 할 소지가

많은 산업이다.

정부는 이러한 제반여건을 감안, 비 경제탄광이 폐광하고자 할 경우 폐광 소요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석탄산업법을 개정(1988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 2. 비 경제탄광 폐광지원

폐광지원제도는 비 경제탄광의 폐광시 폐광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폐광지원대상 광산기준과 폐광대책비 지급기준은 사전에 업계·학계·관련단체·광산노조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마련하였고, 폐광대책비 지급 이전에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으로 하여금 정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폐광지원사업은 1995년도에 사실상 종료되었으나, 아직까지 도 수급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한계탄광의 추가 폐광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석탄산업법령 및 폐광대책비 지급기준을 개정하였다.

폐광을 신청할 수 있는 광산의 기준은 산업자원부 고시로 정하고 있는바 2001년 1월 9일자로 최종 고시된 폐광신청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석탄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를 지급 받고자 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는 폐광에 대한 근로자와의 합의 및 광업권 등의 소멸이전에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에 폐광예비신청을 하여 폐광지원 대상 광산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나. “가”항의 광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광예비 신청을 할 수 없다.

(1) 통상산업부장관이 석탄 제57500-193호(1995.6.30)로 지정한 “장기가행탄광”이외 광산중 1991년 3/4분기 이후의 생산성(O.M.S)이 2.5이상으로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이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광산

(2) 1989년이후 광구분리 또는 신규생산 광산. 다만, 대한광업진흥공

사 사장으로부터 계속가행의 타당성이 있는 광산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폐광예비신청을 할 수 있다.

(3) 1988년이후 이 고시 시행일 까지 계속하여 생산실적이 없는 광산

위와 같은 신청기준에 의해 탄광이 폐광신청을 하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설치된 폐광심의위원회에서 석탄수급상황, 개발경제성, 가용예산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탄광을 선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폐광지원대상 탄광에 대한 폐광대책비 지급내역을 보면, 우선 폐광탄광 근로자에게는 근속년수에 따라 전업준비금으로 평균임금의 5~12개월분, 특별위로금으로 근속 1개월당 평균임금 0.186개월분(단, 13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는 29.016개월 분까지 인정한다)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폐광탄광의 광업자에게는 광업시설의 이전·폐기지원비로 석탄생산톤당 10,000원(30만톤이상 규모는 8,000)을 지원함으로써 폐광정리가 순조롭게 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폐광탄광의 개발지역 중 산림훼손구역에 대하여는 광해발생 방지와 국토보전을 위해 복구비 전액을 정부가 부담·지원하고 있다.

지난 1989년부터 2003년까지 폐광대책비 총 지급금액은 6,383억원(336개 폐광)으로서 다음표와 같다.

석탄산업합리화시책의 일환으로 비경제탄광의 폐광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석탄소비 감소에 상응한 생산량의 감축으로 석탄수급균형을 유지하는데 기여하였으며, 비경제 탄광의 정비에 따라 석탄산업조성사업비 등 정부지원을 장기개발 탄광에 중점지원할 수 있게 되므로써 장기가행탄광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표 Ⅵ-14-8> 폐광대책비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지 급 실 적 | | | | | | | | | | | | | | | |
|---|---|---|---|---|---|---|---|---|---|---|---|---|---|---|---|---|
| | 1989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계 |
| 근로자 대책비 | 38,196 | 23,322 | 29,882 | 39,146 | 53,310 | 21,626 | 14,654 | 6,132 | 3,067 | 1,644 | 2,482 | 656 | 1,005 | 50,197 | 4,395 | 289,714 |
| 광업자 지원금 | 34,187 | 15,252 | 13,915 | 15,163 | 18,600 | 2,404 | 3,026 | 887 | - | - | 593 | - | 79 | 4,915 | 729 | 109,750 |
| 광해방지 및 산림 복구비등 | - | 4,502 | 10,190 | 7,326 | 8,884 | 7,269 | 6,821 | 12,884 | 12,535 | 14,470 | 15,317 | 9,906 | 12,354 | 9,929 | 7,763 | 140,150 |
| 감산근로자대책비 | - | - | - | - | - | - | - | - | - | - | - | - | 45,533 | 36,210 | 16,952 | 98,695 |
| 계 | 72,383 | 43,076 | 53,987 | 61,635 | 80,794 | 31,299 | 24,501 | 19,903 | 15,602 | 16,114 | 18,392 | 10,562 | 58,971 | 101,251 | 29,839 | 638,309 |

<표 Ⅵ-14-9> 폐광에 따른 이직자 현황

| 구 분 | 폐광이직자 | 탄광재취업 | 자 영 업 | 타산업전업 |
|---|---|---|---|---|
| 1989~'98 | 33,422 | 7,429 | 348 | 25,645 |
| 2000~2003 | 525 | 103 | 5 | 417 |
| 계 | 33,947 (100%) | 7,532 (22.2%) | 353 (1.0%) | 26,062 (76.8%) |

<표 Ⅵ-14-10> 석탄생산규모 감축현황

(단위 : 천톤)

| 석탄소비감소량('89~'03) | 폐 광 · 감산 물 량('89~'03) |
|---|---|
| 21,700(1,293) | 17,504 |

* ( )내는 수입무연탄

## 3. 장기 가행탄광의 지정·육성

### 가. 경제탄광의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첫째, 석탄수급안정을 위하여 수요감소 추세를 감안한 적정생산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비 경제탄광의 폐광을 지원함과 아울러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있는 장기가행탄광을 지정하여 중점관리하고, 둘째, 설정된 장기가행탄광에 대하여는 시설현대화 및 기술개발사업에 정부지원을 집중하여 생산성 향상을 적극 유도하고, 셋째,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석탄수요개발을 위하여 강원도 동해지역에 1998년 20만Kw급의 신규 무연탄발전소 건설에 이어 1999년에도 20만Kw급의 신규발전소 1기의 추가 건설을 차질 없이 준공하였다.

### 나. 향후 경제성 있는 탄광에 대한 중점 육성 방향

정부는 적정생산체제 유지를 위하여 1995년 6월 탄광별 부존여건, 개발실태, 수급상황, 지역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11개 장기가행탄광을 선정하였다.

2001년에는 한계탄광의 감산·폐광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장기가행탄광을 재 선정하였으며, 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으로 2005년까지 300만톤 내외 수준으로 생산규모를 유지 할 계획이다.

그리고 1993년부터는 발전소에 대한 석탄공급제도를 중소탄광위주에서 전 탄광 생산비례원칙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종전 10년의 계약기간을 2년(1993～'94)으로 조정하여 급변하는 무연탄 수급상황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납탄 유황분 허용량을 1%미만으로 규제하여 환경개선에 기여함과 동시에, 발전소 설계규격에 맞는 고탄질 무연탄을 공급하도록 발전소 규제열량을 상향조정하여 발전효율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도록 발전용탄 납탄 조건을 개선하였으며, 저열량 수입탄의 부당 유통 방지를 위하여 3,000Kcal/kg미만 저열량탄을 연탄공장에 판매하거나 수입탄을 부당 유통하는 탄광 등은 납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민간용 석탄소비가 급감하고 있는 추세에서 발전용 석탄소비가

확대되지 않을 경우 국내 유일의 에너지원인 석탄산업은 급격히 쇠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3개 무연탄발전소(1,125천Kw)의 발전용 무연탄 소비를 년간 약 2,850천톤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표 Ⅵ-14-11> 발전소 석탄공급실적

(단위 : 천톤)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계획) |
|---|---|---|---|---|---|---|---|---|---|---|---|
| 2,272 | 2,192 | 2,421 | 2,349 | 2,323 | 2,451 | 2,552 | 2,850 | 2,689 | 2,558 | 2,710 | 2,356 |

<표 Ⅵ-14-12> 무연탄 발전소 현황

| 발 전 소 | 소 재 지 | 용 량 (천Kw) | 설계열량 (Kcal/kg) | 2003소비량 (천톤) | 준공일 | 폐지 년도 |
|---|---|---|---|---|---|---|
| 군산 #1 | 전북군산 | 75×1 | 4,800 | 108 | 1968.10 | 2003 |
| 영동 #1 | 강원강릉 | 125×1 | 4,000 | 649 | 1972.12 | 2013 |
| #2 | | 200×1 | 4,000 | | 1979.10 | - |
| 서천 #1, 2 | 충남서천 | 200×2 | 3,500 | 877 | 1983.12 | 2014 |
| 동해 #1, 2 | 강원동해 | 200×2 | 4,600 | 1,231 | 98.9(99.9) | - |
| 계 (7기) | | 1,300 | - | 2,865 | | |

또한, 강원도 동해시에 200천kw 무연탄 발전기 1,2호기를 1999년 9월에 준공하여 현재 가동중에 있으며, 강원도 영월군소재 영월화력발전소는 기존에 운전중인 50천kw 2기는 2002년에 폐지하고 동 부지에 200천kw 1기의 건설여부를 검토중에 있다.

<표 Ⅵ-14-13> 무연탄발전소 사업개요

| 구 분 | | 1호기 | 2호기 |
|---|---|---|---|
| 영월화력 | 발 전 용 량 | 20만kw | |
| | 무 연 탄 소 비 량 | 55만톤/년 | |
| | 준 공 일 | - | |

# 제 3 절 탄광지역 개발

석탄산업과 사무관 오재순

## 1. 개 요

탄광지역은 지하자원의 개발과 함께 생산현장을 중심으로 무질서하게 자생된 촌락으로써 지리적 여건상 기본적인 생활공간이 부족하고 주택을 비롯한 상·하수도, 도로 등 생활기반시설 및 주거편의시설 등이 무계획적으로 급조되어 조악한 실정이며, 탄광개발에 따른 폐석, 폐수 및 탄분진 등으로 자연환경 오염이 심각하여 전체적인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대표적인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낙후된 탄광지역의 합리적 개발과 탄광근로자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제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에 『광산지역 종합개발사업』을 반영하여, 1982년부터 탄광근로자 후생복지증진과 생활환경개선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제1단계 광산지역 종합개발 5개년 (1982～1986)사업에서는 탄광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등 생산현장을 중심으로 근로자 생활편익 제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이어 제2단계 광산지역종합개발 5개년 (1987～1991) 사업에서는 기존 후생복지사업의 보완확충을 통한 탄광근로자의 임대주택 마련 등 전반적인 생활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석유·가스 등 청정연료 선호와 1987년이래 국제 에너지시장의 안정으로 석탄소비는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고, 석탄생산감축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1989년부터 비경제 탄광의 정비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석탄산업구조조정으로 많은 탄광이 폐광됨에 따라, 탄광지역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지역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지역 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비경제탄광의 폐광지원사업과 병행하여 그간의 지역진흥사업을 확대하여 1992년부터 기반시설확충 및 대체소득원개발에 중점을 두는『탄광지역진흥사업 6개년계획』을 추진하였고, 1995년 12월에는『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여 탄광지역경제를 석탄산업 위주에서 지역특성에 적합한 대체산업 중심으로 대폭 전환하여 지역경제를 근원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 2. 탄광지역진흥사업의 추진실적

### 가. 제1단계 광산지역 종합개발(1982~1986)

제1단계 사업은 그 목표를 생활기반시설과 후생복지시설의 확충을 통한 지역개발촉진 및 광산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정주의식 제고 등에 두고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의 주요 탄광지역을 대상으로 총 1,995억원을 투자하여 광산근로자의 자녀학자금 지원, 사택개량, 광산지역의 도로, 상·하수도관 교체 등 기간시설의 정비확충을 추진하였다.

### 나. 제2단계 광산지역 종합개발(1987~1991)

제2단계 사업은 광산근로자를 위한 양적지원을 질적향상으로 전환을 목표로 장기개발 탄광의 건전육성을 위한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장기개발 탄광지역을 중심으로 2,530억원을 투입하여 광원사택용 아파트와 지

역석탄회관의 건립, 공해방지사업의 확대 등을 추진, 주거환경의 질적개선 및 도시환경정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표 Ⅵ-14-14> 광산지역 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 부 처 별 | 사 업 명 | 1단계(1982~'86) | | 2단계(1987~'91) | | 계 | |
|---|---|---|---|---|---|---|---|
| | | 사업량 | 투자액 | 사업량 | 투자액 | 사업량 | 투자액 |
| 산업자원부 | 학자금, 사택 도로, 공해방지시설등 | - | 130,467 | - | 201,908 | - | 332,375 |
| 행정자치부 | 지방도포장등 | - | 28,440 | - | 40,058 | - | 68,498 |
| 건설교통부 | 국도포장 | 159㎞ | 30,877 | - | - | 159㎞ | 30,877 |
| 보건사회부 | 보건소현대화 | 11개소 | 467 | - | - | 11개소 | 467 |
| 노 동 부 | 진폐병원 | 1동 | 5,200 | 2동 | 5,338 | 3동 | 10,538 |
| 농 림 부 | 조림산업등 | - | 507 | - | 975 | - | 1,482 |
| 건설교통부 | 영동선전철화 | - | - | 87㎞ | 2,700 | 87㎞ | 2,700 |
| 환 경 부 | 분뇨처리시설 | 60개소 | 3,525 | - | - | 60개소 | 3,525 |
| 문화관광부 | 도서관건립 | - | - | 5동 | 2,005 | 5동 | 2,005 |
| 합 | 계 | - | 199,483 | - | 252,984 | - | 452,467 |

다. 탄광지역 진흥사업 6개년 계획 추진(1992~1997)

(1) 추진경위

강원도 태백시를 비롯한 탄광지역은 석탄산업 구조조정에 따라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지역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는 등 우려할 만한 지역문제가 발생하였다.

<표 Ⅵ-14-15>　　탄광지역 진흥사업 대상지역 현황

| 구　　분 | 태백시 | 정선군 | 영월군 | 삼척시(도계) |
|---|---|---|---|---|
| 인구수(명) | 68,151 | 22,730 | 54,889 | 22,942 |
| (1988대비1994인구감소율%) | △40.8 | △56.5 | △25.9 | △45.6 |
| 재정자립도(%) | 15.9 | 15.4 | 21.1 | 18.8 |

주 : 1994년도 기준

이러한 폐광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기개발이 가능한 탄광의 지속적인 육성과 더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진흥사업 추진을 위해 석탄산업법을 개정(1991.1.14), 탄광지역 진흥사업 지원제도를 법제화하였으며, 1991년 5월에는 강원도내 태백시·정선군·영월군·삼척시 등 4개 시·군을 진흥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1992년부터 1996년까지 42개사업에 약 1,894억원을 투자하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시설 확충과 광공단지 조성을 비롯한 대체산업 육성 등의 지역 진흥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⑵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보완

그러나 탄광지역이 오지에 위치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대도시와의 교통망 확충이 요구되고, 석탄광 폐광속도가 예상보다 급속히 진행되어 대체산업 육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는 등 기존의 『탄광지역진흥5개년계획』의 수정·보완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1994년 11월 사업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사업비를 1,983억원으로 증액(지방비 347억원 포함)하는 한편, 사업내용을 전면 보완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중단하는 대신 도로의 확·포장, 터널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토록 하고 주민소득사업과 직접 연계되는 대체산업육성에 집중투자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였다.

1994년도에 보완한 탄광지역 진흥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기반시설 확충사업에는 태백시의 황지-장성-동점간 약 8㎞의 도로 확·포장, 정선군의 쇄재터널 및 연결도로 약 2.0㎞ 개설, 삼척시 도계읍의 도로 확·포장 17㎞, 영월군의 시가지도로 확·포장 약 5㎞ 등이며 대체산업 육성사업으로는 광공단지 우회도로 개설 등 공단조성에 의한 고용증대 사업과 정

선군의 화암종유굴, 태백시의 용연동굴 등 4개 동굴개발에 의한 소득사업 및 사북의 폴리마콘크리트공장, 고한레포츠 센타조성 등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등 총50개 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투자규모는 1,983억원으로 자금조달은 국비에서 1,636억원, 지방비에서 347억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표 Ⅵ-14-16> 탄광지역진흥사업 투자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 계 | 1992~'96 실적 | 1997 실적 |
|---|---|---|---|
| 기반시설확충 | 1,121 | 781 | 340 |
| 대체산업육성 | 789 | 604 | 185 |
| 생활환경개선 | 73 | | - |
| 계 | 1,983 | 1,458 | 525 |
| 국 비 | 1,636 | 1,229 | 408 |
| 지 방 비 | 347 | 229 | 117 |

## 3. 특별법 제정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 가. 추진경위

정부는 폐광지역의 경제침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그간의 국고지원에 의한 국부적인 기반시설 등을 가지고는 침체된 지역경제회생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폐광지역을 대규모 고원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을 제정·공포하였다.

### 나. 특별법의 주요내용

폐광지역의 임야가 대부분 국유림이고 보전임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등 고원관광지 개발에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제도로 인해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특별법에 산지관리법 적용의 특례, 자연환경보전법 적용특례 등 각종 인허가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실질적으로 민자유치에 의한 개발사업이 용이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폐광지역중 1개소에 내국인이 출입할 있는 카지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는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규정을 두어 강원랜드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 폐광지역의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고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 등 각종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표 Ⅵ-14-17> 특별법령 등에서 정한 지원내용

| 구 분 | 지방자치단체 | 민간개발자 | 지역주민 등 |
|---|---|---|---|
| 재정지원 |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br>-20%인상 지원 | ○창업자금 등의 융자 또는 보조지원<br>-산업자원부 고시<br>*간접시설 보조지원<br><br>○민간개발자에 대한 재정지원<br>-지자체에 귀속되는시설의 이용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융자 또는 보조금 우선 및 상향지원<br>-지역주민 50%이상 출자·고용시<br>*간접시설 보조지원<br><br>○카지노업 이익회수금에 의한 별도지원 대책 가능 |
| 기타지원 | ○지방채권 발행으로 재원확보<br><br>○카지노 이익회수금에 의한 개발사업지원 | ○외자도입법에 의한 차관도입<br><br>○조세감면<br>-관련법 개정시 반영<br><br>○지방세 감면<br>-취득세 등(강원도 추진중) | ○공익부문 배당액 소액주주에 특별배당<br>-1/100미만 주식 소유자<br><br>○이주대책<br>-생활근거 상실자<br><br>○우선고용<br>-지자체장 우선고용<br><br>○우선구매<br>-농·축산물 등 |

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정부는 1995년 12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고, 1996년 4월에는 동법시행령을 제정하였으며, 1996년 8월에는 동법에 의거하여 강원도의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등 4개시·군 전체면적의 17.7%에 해당하는 678.4㎢와 경상북도 문경시 면적의 13.8%에 해당하는 125.9㎢를, 2000년 10월에는 충청남도 보령시 면적의 26.4%에 해당하는 150㎢를, 2001년 6월에는 전라남도 화순군 면적의 15.2%에 해당하는 119.6㎞를 신청에 의해 지정 고시하였다.

또한, 1996년 8월에는 진흥지구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및 개발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체산업육성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함으로써 고용촉진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체산업 사업장과 연결도로망 구축 및 시가지정비 등 기반시설 사업비를 국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라.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계획 지원

'98.12월 건설교통부에 의하여 진흥지구개발계획이 변경 승인됨에 따라 '97～2005까지 강원도 등 4개 지자체에서 216개 사업 총투자비(민자포함) 63,147억원의 인프라 구축 및 관광레저산업 등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부는 폐광지역진흥지구에 SOC 등 기반시설확충사업을 2005년까지 5,914억원을 지원할 계획아래 2003년말까지 4,363억원을 보조하고 있다.

<표 Ⅵ-14-18> 진흥지구 개발사업 지원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 | 강 원 도 | 경상북도 | 충청남도 | 전라남도 | 계 |
|---|---|---|---|---|---|---|
| 사업규모 | 총 규모 | 43,125 | 16,774 | 2,372 | 800 | 63,147 |
| | (사업수) | (108개사업) | (56개사업) | (30사업) | (23개사업) | (217개사업) |
| | ·국 비 | 5,813 | 2,259 | 1,107 | 524 | 9,703 |
| | ·지방비 | 2,857 | 2,179 | 233 | 72 | 5,341 |
| | ·민 자 | 34,531 | 12,336 | 1,032 | 204 | 48,103 |
| 우리부 지원 (사업수) | | 4,289 (40개사업) | 800 (21개사업) | 588 (18개사업) | 237 (11개사업) | 5,914 (90개사업) |

<표 Ⅵ-14-19>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원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 계 | '96 | '97 | '98 | '99 | 2000 | 2001 | 2002 | 2003 |
|---|---|---|---|---|---|---|---|---|---|
| 우리부 SOC지원 | 4,363 | - | 300 | 838 | 626 | 630 | 666 | 536 | 768 |
| (사업수) | (87) | - | - | - | - | - | - | - | - |
| 대체산업융자 | 1,294 | 215 | 152 | 128 | 23 | 296 | 200 | 160 | 120 |
| | 5,657 | 215 | 452 | 966 | 649 | 926 | 866 | 696 | 888 |

마. 카지노 관광단지 사업추진

정부는 석탄수요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경제타격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된 강원도 정선군 고한·사북지역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건설을 허용하였다.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95년 12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98년 6월에 정부와 강원도가 510억원을 출자하여 카지노 사업의 운영주체인 (주)강원랜드를 설립하였

으며, 아울러, 투자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99년 7월 6일부터 7월 8일까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민간지분 49%에 대한 주식을 공모하였다.

2000년 10월 Small 카지노를 개장하였고, 2000년 6월 착공한 Main 카지노는 2003. 3월 완공되어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강원랜드를 카지노뿐만 아닌 종합적인 국제 관광휴양지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콘도, 골프장, 스키장 등 제반 휴양시설을 위한 공사를 진행중에 있다.

## 4. 탄광지역개발사업 추진

### 가. 추진경위

정부는 '99.2월 태백시위사태를 계기로 급속한 폐광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가행탄광지역에 대해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상의 지원과 별도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감산·폐광으로 감소하는 석탄가격 관련 지원금 만큼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키로 하였다

### 나. 지원내역

#### ⑴ 지원기준

태백시를 포함한 '99년 기준 전국 7개 가행탄광지역에 대하여 향후 폐광·감산하더라도 탄가안정대책비, 폐광대책비 등 감소하는 석탄가격관련 지원금 만큼을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 보전 지원할 계획이다.

#### ⑵ 해당지역 및 지원액

탄광지역개발사업은 탄광지역 주민의 소득·고용증대를 위한 대체산업단지조성, 관광지개발, 근로자주택개량사업 등 후생복지사업 등에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t2003년말 현재 강원도(태백시, 정선군, 삼척시, 영월군), 경북(상주시), 충북(보은군), 전남(화순군)에 1,56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4년에는 84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Ⅵ-14-20> 탄광지역개발사업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 구 분 | 연 도 별 사 업 예 산 | | | | |
|---|---|---|---|---|---|
| | '01 실적 | '02 실적 | '03 실적 | '04계획 | 합계 |
| 탄광지역개발사업 | 27,047 | 56,318 | 73,016 | 84,701 | 241,082 |

# 제 4 절 석탄 및 연탄가격 결정

석탄산업과 사무관 정동교

## 1. 개 요

석탄 및 연탄 수요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8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IMF 이후 그 감소 속도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최저 수요에 이른 현시점에서의 연탄은 도서·벽지·산동네 등의 서민들을 중심으로, 2002년말 기준 전체가구의 1.2%에 해당하는 189천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다.

<표 Ⅵ-14-21> 무연탄 및 연탄 수요 현황

(단위 : %)

| 구 분 | '82~'86 | '87 | '89 | '91 | '93 | '95 | '96 | '97 | '98 | '99 | '00 | '01 | '02 | '03 |
|---|---|---|---|---|---|---|---|---|---|---|---|---|---|---|
| 수요 증감율 | 3.5 | △2.2 | △11.1 | △18.1 | △23.0 | △20.8 | △17.9 | △16.3 | 1.9 | 0.3 | 7.9 | △3.2 | △5.4 | 3.5 |
| 연탄사용가구비중 | 75.5 | 81.8 | 71.2 | 52.4 | 30.8 | 10.6 | 5.8 | 4.0 | 2.4 | 2.1 | 1.5 | 1.4 | 1.2 | - |

따라서 정부에서는 연탄의 주 소비자인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물가안정 및 석탄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1988년 수준으로 탄가를 동결하고, 1989년부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최고가격의 변경)의 규정에 의거, 석탄 및 연탄의 최고가격을 고시하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등에서 재원을 확보하여 석탄생산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액을 가격보조로 지원하고 있으며, 1996년부터 정부재정 축소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석탄가격을 현실화하고 있다.

## 2. 석탄 및 연탄가격 안정지원

### 가. 가격고시 체계(최고가격제도)

현행 가격고시 체계를 보면 석탄은 3급~6급탄(4,999~4,200Kcal/kg) 가격만 고시하였고, 2급이상탄(5,000Kcal/kg이상)과 저급탄(4,200Kcal/kg미만)은 가격을 자율화하였으며, 연탄의 경우는 산업자원부 고시로 공장도 및 판매소가격까지만 고시하고 가정도가격은 1990년부터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Ⅵ-14-1> 현행 연탄 유통단계별 가격고시체계

| 공장도가격 | 수 송 비 | 판매소판매가격 | 가정도가격 |
|---|---|---|---|
| 184.00원/개 | (12.75원/개) | 201.75원/개<br>판매소수수료<br>5원/개 포함 | 시·도지사에게 위임 |

※ 연탄가격은 서울기준임

나. 가격조정

석탄은 1971~2003년의 32년동안 총 35회, 연평균 1.1회 가격을 조정하였으며, 동 기간동안 인상율은 2,358%(3급기준)로서, 연평균 10.5%인상되었다. 한편, 석탄의 등급을 1971~1981년 동안에는 24등급으로 구분하였고, 1982년 이후에는 11등급으로 구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표 Ⅵ-14-22> 무연탄(분탄) 최고 판매가격

(단위 : 원/톤)

| 등 급 | 열량 (Kcal/kg) | 최고판매가격 | 비 고 |
|---|---|---|---|
| 1급 | 5,200 ~ 5,399 | 자율가격 | |
| 2급 | 5,000 ~ 5,199 | 〃 | |
| 3급 | 4,800 ~ 4,999 | 75,950 | |
| 4급 | 4,600 ~ 4,799 | 72,280 | |
| 5급 | 4,400 ~ 4,599 | 68,590 | |
| 6급 | 4,200 ~ 4,399 | 64,860 | |
| 7급 | 4,000 ~ 4,199 | 자율가격 | |
| 8급 | 3,750 ~ 3,999 | 〃 | |
| 9급 | 3,500 ~ 3,749 | 〃 | |
| 급외 | 3,250 ~ 3,499 | 〃 | 발전용에 한함 |
| 〃 | 3,000 ~ 3,249 | 〃 | 〃 |

주 : 1) 최고 판매가격은 실수요자가 요구하는 철도역 또는 해운수송시 출하항구에 도착한 화차에 실려 있는 가격임.

2) 강원도 태백시, 정선군 및 삼척군 도계읍에서 생산된 무연탄을 동일 소재의 연탄공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고 판매가격에서 철도운임 100km구간 상당액을, 해상수송을 위해 묵호항으로 수송되는 무연탄(발전용 제외)에 대해서는 철도 운임 50km구간 상당액을 각각 수송수단에 관계없이 감한 금액을 최고 판매가격으로 함.

연탄은 1974~1988년의 14년간 총 15회, 연평균 1.1회 연탄가격을 조정하였으며, 동 기간 인상율은 서울 공장도가격 기준으로 612%로서 연평균 15% 인상하였으나, 1989년부터는 연탄의 주 소비자인 저소득층 서민가계의 연료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판매가격을 동결시켰고 2003년에는 가격구조의 왜곡을 막기 위하여 연탄가격을 10%인상하였다.

<표 Ⅵ-14-23> 연탄의 최고 판매가격

(단위 : 원/개)

| 시 도 별 | 지 역 별 | 공장도가격 | 시 도 별 | 지 역 별 | 공장도가격 |
|---|---|---|---|---|---|
| 서 울 | 서 울 | 184.00 | 경 남 | 마 산 | 190.50 |
| 강 원 | 속 초 | 203.25 | | | |
| 전 남 | 목 포 | 195.50 | 제 주 | 제 주 | 203.25 |
| | 여 수 | 192.75 | | | |

주 : 1) 공장도가격은 서울 및 해안지역의 1호탄(3.6㎏)기준 최고 판매가격이며, 상기 이외의 지역별 최고 판매가격은 공급지역의 관할 시·도지시가 다음 기준에 따라 정하여 고시함.

가) 도착역에서 원탄을 2차수송(소운반)하여 제조함에 따른 추가제조비용

○ 소운반거리 10㎞이내인 지역 : 6.50원/개

○ 소운반거리 10㎞초과지역 : 6.50원/개+매10㎞ 초과시마다 1.75원/개

나) 울릉도 지역 및 기타 해상수송을 통하여 원료탄이 공급되는 지역은 해상수송비용 및 제조비용 증가분을 가산할 수 있다.

다) 강원도 태백시, 정선군, 삼척시(도계읍)는 철도운임공제액, 자동차수송비 등을 감안하되 서울지역의 공장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2) 판매소가격

가) 판매소가격은 판매소까지의 수송비 개당 12.75원(상·하차비 포함)과 개당 판매소 수수료 5원을 포함함.

나) 연탄공장이 없는 지역에 연탄을 공급하는 경우 판매소까지의 수송에 따른 추가비용

○ 내륙지역 : 연탄공장이 소재하는 시·읍·면의 중앙지점으로부터 15km를 초과하는 지역은 매 5km 초과시마다 1.50원/개를 가산할 수 있음.

○ 도서지역 : 별도로 정하여 가산할 수 있음.

○ 공급구역 관할 시·도지사는 역내의 원활한 연탄수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탄을 판매소에서 소비자에게 운반하는 데 필요한 배달료를 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89년부터 15년간 총 3조 8,786억원을 가격보조

로 지원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2,07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Ⅵ-14-24> 연도별 석탄 및 연탄가격 인상추이

(단위 : %)

| 구분 | 1986 | 1987 | 1988 | 1989 ~'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01 | 2002 | 2003 | 현 행 가 격 |
|---|---|---|---|---|---|---|---|---|---|---|---|---|
| 석탄 | 6.4 | 4.8 | 6.9 | 동결 | 5.0 | 10.0 | 15.0 | 15.0 | 동결 | 5.0 | 5.0 | 75,950원/톤(3급탄) |
| 연탄 | 4.1 | 5.1 | 4.3 | 〃 | 동결 | 동결 | 동결 | 동결 | 〃 | 동결 | 10.0 | 201.75원/개(판매소가격) |

<표 Ⅵ-14-25> 연도별 정부지원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 1989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
| ○석탄부문(A) | | | | | | | | | | | | | | | |
| - 산재보험료 | 470 | 788 | 1,378 | 1,506 | 2,763 | 3,028 | 3,182 | 3,166 | 3,124 | 2,887 | 2,740 | 1,955 | 1,879 | 1,688 | 1,486 |
| - 진폐기금 | 258 | 422 | | 385 | 872 | 678 | 457 | 422 | 484 | 333 | 341 | 372 | 434 | 395 | |
| - 자녀학자금 | 118 | 148 | 518 | 12 | 80 | 99 | 131 | 154 | 174 | 186 | 195 | - | - | - | 416 |
| - 철도및생산 | 94 | 87 | 44 | 80 | 78 | 77 | 90 | 107 | 120 | 119 | 109 | 121 | 125 | 117 | - |
| - 감산지원 | - | 131 | 83 | 1,029 | 1,733 | 2,068 | 2,138 | 2,253 | 2,115 | 1,968 | 2,051 | 1,443 | 1,222 | 1,020 | 115 |
| - 처우개선비 | - | - | 733 | - | 3 | 8 | 8 | 3 | 5 | 8 | 1 | 3 | 2 | 0 | 912 |
| | | | - | - | - | 106 | 366 | 230 | 231 | 187 | 44 | 19 | 98 | 156 | 43 |
| | | | - | - | - | - | - | - | - | 94 | - | - | - | - | - |
| ○연탄부문(B) | 194 | 333 | 471 | 360 | 567 | 674 | 490 | 343 | 403 | 365 | 502 | 524 | 445 | 480 | 595 |
| - 제 조 비 | 194 | 282 | 377 | 312 | 499 | 559 | 400 | 272 | 342 | 318 | 440 | 464 | 376 | 410 | 513 |
| - 수송비 등 | - | 51 | 94 | 48 | 68 | 115 | 90 | 71 | 61 | 47 | 62 | 60 | 69 | 70 | 82 |
| 합 계(A+B) | 664 | 1,121 | 1,849 | 1,866 | 3,330 | 3,702 | 3,672 | 3,509 | 3,527 | 3,252 | 3,242 | 2,479 | 2,324 | 2,168 | 2,081 |

## 3. 향후 가격안정대책

### 가. 가격제도 개선

석탄산업의 자생력제고와 정부 재정부담 축소를 위하여 석탄가격은 단

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연탄가격은 서민연료인 점을 감안하여 타 에너지가격과 비교하여 점진적으로 자율화 할 계획이다.

나. 가격조정

석탄 및 연탄생산원가의 인상요인은 경영지도를 통하여 최대한 억제시키고, 인상요인의 일부는 유통구조 개선과 경영개선으로 흡수시키는 한편, 정부재정부담의 축소를 위하여 인상에 따른 부작용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탄가를 조정할 예정이다.

## 제5절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석탄산업과 사무관 김권성

석탄은 우리 나라의 유일한 부존에너지 자원으로 가정연료의 주종을 이루면서 국민생활에 크게 기여해 왔고, 국산 에너지 사용으로 외화를 절감하는 등 국가경제 발전에도 지대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수요감소와 가격경쟁력 약화라는 이중고를 겪게 되면서, 석탄산업 전반에 걸쳐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동안 정부는 석탄수요의 감소추세에 맞추어 1989년부터 비경제탄광은 폐광하고 경제탄광은 합리적으로 육성하는『석탄산업구조조정』을 추진하였으나, 생산감축보다 수요감소 추세가 더 빨라 만성적 공급과잉 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보아 앞으로도 석탄생산의 감축은 불가피한 실정이나 석탄광 개발과 함께 생성된 탄광지역이 생산감축으로 인하여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어, 더 이상의 대폭적인 감산추진이 곤란한 시점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탄광지역의 경제안정을 위하여 석탄생산 감축속도를 적절히 조절함과 아울러 탄광지역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으로 1995년 3월『석탄산업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에는 석탄수급안정을 위해 11개 장기가행탄광을 지정

하고 나머지 비경제탄광에 대한 폐광을 사실상 완료하였으며, 탄광지역의 진흥을 위해서는 폐광지역을 고원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함으로서 법적인 뒷받침을 마련하였다.

또한, 2001년도에는 「석탄산업장기계획('01～'05)」을 수립하여, 300만톤 내외로 석탄 장기수급 균형을 유도하고 탄광지역 진흥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석탄산업의 유지는 단기적인 경제성만으로는 그 가치를 논하기 어렵고 앞으로 남북통일시 북한의 무연탄 수요에 대비하고, 국내 유일의 부존에너지원인 석탄자원의 활용을 위한 장기투자라는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탄광지역의 개발·지원에 관한 비용도 열악한 탄광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탄광지역 근로자와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